

협력사 신규등록 절차 및 운용 가이드 라인

(주)에이비네트웍스

1.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사등록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회사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가이드라인의 구성

- 1)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 사항
- 2) 협력사의 변경사항 수정등록 관련 사항
- 3) 협력사와의 거래정지 관련사항

3. 용어의 정의

- 1) 가이드라인 상의 "협력사의 범위"
 - (1) 부품개발업체 : 부품개발업무 표준에 의하여 차량 및 기계부품 개발 및 공급을 하며, 당사 1차 부품업체로서 인정되는업체
 - (2) 특수업체 ; 특수한 용도의 부품만을 공급하는 업체
- 2) "협력사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운용하는 협력사 그룹을 의미한다.
- 3) "협력사 등록"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협력사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2)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 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포함, 이하같음)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 3)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5.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협력사로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6.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 변경등록

6.1 등록신청

신규 등록 희망업체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업체평가 신청서
- 2) 재무제표(등록신청일 직전 3개년도의 공인기관의 공인을 필한 것)
단, 신설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투자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신용평가서 or 평가의뢰 현황

6.2 업체평가

구분	평가기준	평가방법	비고
일회성 구매업체			평가면제
일반구매	신용평가 기관 신용평가서 (단,종합신용등급 B 이상)	서류평가	
프로젝트성 업체	경영관리(50 점)+신용평가서(50 점) (단,종합신용등급 B 이상, 등급별차등적용)	서류 또는 방문평가	
부품개발업체	경영관리(15 점)+신용평가서(15 점) +품질경영체제평가(70 점) (단,종합신용등급 B 이상, 등급별차등적용)	방문평가	

6.3 평가결과 종합

당사 업체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 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점수는 60 점(100 점만점)이하, 종합신용 등급 B 이하인 업체는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단, 신규업체가 원천기술의 보유, 당사 개발품에 대한 관련 특허권의 보유등과 같이 등록이 불가피할 경우 구매본부장의 승인에 한해서 등록할 수 있다.

6.4 등록 품위 및 승인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 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6.5 등록실시

당사 업체담당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 1) 업체실태조사서는 신규 등록업체가 작성후 당사가 보관한다.

- 2) 서약서, 윤리실천강령 및 확약서는 신규 등록업체가 작성하여 인감 날인후 당사가 보관한다.
- 3) 당사와 신규 등록업체는 기본거래계약서를 체결하여 쌍방 대표이사가 서명한 문서를 시스템내에서 보관한다.

6.6 거래개시 통보

기본거래계약서 체결 15 일 이내에 등록업체와의 거래 개시 내용을 협력사, 업무관련팀에 서면으로(전자문서포함) 통보한다.

7. 거래등록업체의 계약해제, 해지

- 1) 당사의 협력사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 시 당사 해당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단, 대표자 변경시 상속, 단순 대표권 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 변경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제 3 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 해당 담당자에게 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평가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8. 거래등록업체의 취소

- 1) 거래등록업체를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거래등록업체의 취소사유는 '정당한 등록취소'와 '부당한 등록취소'로 구분한다.

1. 정당한 등록 취소 경우는 다음과 같다.

- ㄱ)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ㄴ)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ㄷ)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ㄹ)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부당한 등록 취소 경우는 다음과 같다.

- ㄱ)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ㄴ)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ㄷ)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ㄹ)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